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1973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8. 30.

제 의 : 의 장

1. 제의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선임기간 : 선임된 날부터 2024. 6. 30.까지
- 위원정수 : 7명
- 위원명단: 안영호의원, 박경흠의원, 김도운의원, 이명녀의원
홍영진의원, 김태욱의원, 정재환의원

3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

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